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 13.] [조례 제1448호, 2019. 11. 1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감사담당관), 02-3425-5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옴부즈만"이란 구민들이 이의가 있거나 억울함이 있을 때 독립적 위치에서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권고해 민원 사항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겪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제13조에 따라 구민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9. 16.]

제3조(구민옴부즈만의 관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이하 "구민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관할은 구와 그 소속기관(법령에 의하여 구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5. 9. 16.>

[제2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4조(구민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 구민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구민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4.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의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민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4. 판결,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신청을 접수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제목개정 2015. 9. 16.]

[제3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5조(구민옴부즈만의 책무) ① 구민옴부즈만은 구민권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구와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옴부즈만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5. 9. 16.]

[제4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6조(구의 책무) 구는 구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9. 16.]

[제5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7조(구민옴부즈만의 구성 등) ① 구민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구민옴부즈만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3.>

② 구민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민옴부즈만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9. 16.>, <개정 2019. 11. 1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 9. 16.>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 9. 16.>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5. 9. 16.>

4. 구에서 정무직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9. 11. 13.>

5.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관련된 분야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9. 11. 13.>

가. 사회복지사 1급 : 3년 이상

나. 사회복지사 2급 : 5년 이상

6.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 9. 16.>

7.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개정 2015. 9. 16.>

③ 구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궐위 시에는 새로운 구민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15. 9. 16.>

④ 구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민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 9. 16.>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6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8조(모집공고) 구는 구청 홈페이지와 구 소식지, 정부의 고용관련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음부즈만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16.]

제9조(구민음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구민음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구민음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과 고충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5. 9. 16.>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5. 9. 16.>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5. 9. 16.>
3.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5. 9. 16.>
4.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개정 2015. 9. 16.>
5. 구민음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처리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11조(신분보장) 구민음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16.>

1. 본인이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 태만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5.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12조(비밀유지 의무) 구민음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15. 9. 16.]
[제10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13조(고충민원 신청 등) ① 구민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처분 등(사실행위를 포함)의 시기와 그 내용

-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 5. 5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 사항[제목개정 2015. 9. 16.]
- [제11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14조(고충민원 조사 등) ① 구민옴부즈만은 고충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3조제2항에 해당될 때
-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이하 “고충신청인”이라 한다)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 3.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 4.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제목개정 2015. 9. 16.]

[제12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15조(고충민원 조사 방법) ① 구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 구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9. 16.]

[제13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16조(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보)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6.>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고충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6.>

③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충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9. 16.]

[제14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17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구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구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18조(조치결과 요구 등) ① 구민옴부즈만이 제17조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구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6.>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구는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구의회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16.>

[제16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19조(공표) ① 구민옴부즈만은 제14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와 제17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공표할 수 있다.
. <개정 2015. 9. 16.>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15. 9. 16.>
[제17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20조(사무기구) 구민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21조(활동비 지원) 구는 구민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5. 9. 16.>]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5. 9. 16.>]

부칙 <제1448호, 2019.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고충조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5.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